

제328회 임시회
2014. 3. 13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최병윤 의원 외 6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3월 3일
- 회부일자 : 2014년 3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·운영 조항을 신설하여, 「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”활동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별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 분야별 10명 이내 소위원회 구성·운영 조항 신설(안 제7조의2)
- 소위원회의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출석 등 의견 청취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문구 정비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가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고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

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.

-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, 소위원회에 본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하지만, 본 개정 조례안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의 심의에 도움을 주는 사전 검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비록 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, 소위원회 설치 조항의 신설은 법리적 문제가 없음.

※ 소위원회 설치·운영 타시도(5개 지역) : 부산, 대구, 대전, 경기, 경북, 제주

-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5조에서는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”에 따라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수정하고,
- 제6조제3항의 내용이 제7조제3항과 중복되므로 당 조항을 삭제함.
- 안 제7조의2(소위원회)에서는 소위원회 구성·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였고,
- 안 제8, 9조에서는 소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자료제공 요청 권한 명시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.